

●환경부고시 제2023-102호

환경부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8-237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환경부장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제55조제3항”을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청인이”를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려는 자 또는 법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로, “대체하여”를 “화학물질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로 한다.

별표 제4호 단서 중 “단량체 또는 반응물 중 유해화학물질은”을 “미반응 단량체 또는 미반응 반응물이 0.1중량퍼센트 이상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단량체 또는 반응물을”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가 해당 혼합물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유럽 연합의 「혼합물 내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 명칭 사용 신청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